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16일, 최민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11.24.) 상정/축조심사/의
결(수정가결)

제17차 전체회의(2025.11.24.)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최민희의원)

현행법은 울산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명현)

개정안은 울산과기원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기원의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재 이사회 회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세부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위원)

현재 이사회 회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정관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수정이유

현재 이사회 회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정관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이사회는 회의 일시, 장소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회의록의 작성 내용·방식과 회의록의 공개 기간 등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2명 이상의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단서 중 “대통령령”을 “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내용·방식, 배부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 기간·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u>제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u> <u>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u> 1. <u>개회,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u> 2. <u>안건</u> 3. <u>의사 진행 과정 및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u> 4. <u>출석한 임원과</u>	<u>제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u> <u>-----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2명 이상의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삭 제>

6. 그 밖에 이사장

<삭 제>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과 회의

<삭 제>

조서에는 출석 임

원 모두가 그 성명

을 알 수 있도록

서명[「전자서명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을 말한다)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

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

이에 걸쳐서 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

원 중 3명을 호선

(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

	<u>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u> <u>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u> <u>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삭 제></u> ② ----- -----. <u>정관</u>----- ----- ----- ----- -----.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내용·방식, 배부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 기간·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정관</u>-----.
--	---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제7조의3 및 제7조의4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2명 이상의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내용·방식, 배부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 기간·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집되는 이사회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2명 이상의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u> <u>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내용·방식, 배부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 기간·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u>제7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생 략)</u> <u>제7조의3(학력의 인정) (생 략)</u>	<u>제7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현행 제7조의2와 같음)</u> <u>제7조의4(학력의 인정) (현행 제7조의3과 같음)</u>